

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9. 25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. 9. 25

다. 상정일자 : 제114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  
제3차 총무위원회(2003. 10. 13)

## 2. 제안설명요지(김진문 을숙도문화회관장)

### 가. 제안사유

- 을숙도문화회관은 서부산권의 유일한 종합예술공간으로 2002. 10월 개관한 이후 타 문화회관과 사용료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
- 대공연장 규모(좌석수)가 당초 설계와 다르게 표시되어 변경하려는 것임.
- 전시실을 규모 및 위치상 누구나 알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골자

- 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 별표 1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과 관련하여 기본시설사용료의 전시실(I, II, III)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함(안 별표)
- 대공연장 규모(좌석수) 변경 : 797석 → 708석(장애인석 8석 별도)
- 전시실 명칭 변경 : 제1전시실(108.9㎡) → 제2전시실  
제2전시실(261.36㎡) → 제1전시실

### 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을숙도문화회관이 2002. 10월 개관한 이후 시설의 일부를 당초설계상의 수치와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으로
- 조례 제8조 1항 별표 1중. 대공연장 규모를 797석 → 708석(장애인석별도)으로 변경하고,
- 전시, 관리동 중 제1전시실, 제2전시실을 면적의 크기에 따라 제2전시실을 → 제1전시실로 하고, 제1전시실을 → 제2전시실로 변경하는 것과
- 전시실의 사용료가 타 문화회관보다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타 문화회관의 사용료와 형평에 맞게 낮추려는 것으로,
- 시설규모 및 명칭 변경은 현실과 통상적인 사고의 원리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하겠으나, 사용료 인하문제는 타 문화회관 사용료와 형평성 고려도 중요하겠지만 수익적인 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.

5. 질의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의결